

「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폐지령(안)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

나.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되, 기록물 이관, 계약정산 등 사무정리를 위해 사무기구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도록 함(부칙 제2조)

3. 의견제출

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대기환경정책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폐지령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
- 전자우편 : stgtoto1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87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(전화 (044) 201-6874, 팩스 (044) 201-68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1-167호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2일

환 경 부 장 관

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독물질 지정 확대 등으로 인해 「화학물질관리법」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늘어남에 따라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취급기준 및 표시 기준 등 조항이 일반 소

비자 및 가정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우려가 있음

이에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가정, 사무실,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「화학물질 관리법」의 취급 기준 및 표시 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
- 전자우편 : bm.k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840

3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)를 참조하시거나, 환경부 화학안전과(전화 044-201-6840, 팩스 044-201-68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여성가족부공고제2021-42호

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「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12일

여성가족부장관

「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증제한 기준을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, ‘남성 육아휴직 이용’ 활성화를 위한 가점 배점상향 등 근로여건 개선 지표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가족친화 인증 취지 및 정책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, 「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신설함